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20호 2017. 06. 13. (화)

【 조 례 】

- 정선군조례 제2572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573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정선군조례 제2574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정선군조례 제2575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정선군조례 제2576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정선군조례 제2577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정선군조례 제257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35
- 정선군조례 제257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고 시 】

- 정선군고시 제2017-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55

【 공 고 】

- 정선군공고 제2017-535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59
- 정선군공고 제2017-587호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63

조 례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2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이농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기여하는 목적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이하 “추진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분야
2. 주거분야
3. 임신·출산분야
4. 보육분야
5. 교육분야
6. 귀농·귀촌분야
7. 전입분야
8. 사회적 소외계층분야
9. 성평등분야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제6조(담당부서 지정) 군수는 추진사업의 담당부서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원 및 대상·기준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추진사업의 지원내용·대상·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제6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3장 추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정선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구늘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 2. 추진사업의 적합성·타당성 등 선정기준
 - 3.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 4. 제11조의 지원중단
 -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인구늘리기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과장 및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

- 1. 사회단체·기업체 등 임직원
- 2. 교육기관·연구기관 등 전문가
- 3.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보고 및 지원중지)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결과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표창) 군수는 인구늘리기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단체·기업체, 공무원 등에게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기록·관리) 읍·면장은 각종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담당부서 및 분야별 총괄부서(제6조 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1. 임신·출산 지원	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보건소
	나. 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마. 난청조기진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아. 긴급복지 해산비(해산급여)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주민생활지원과
	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법	여성청소년과
	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복지법	주민생활지원과
	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타.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특례법	여성청소년과
	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역경제과
	하. 출산장려금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과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2. 보육지원	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여성청소년과
	나. 영유아보육료		
	다. 방과 후 보육료		
	라.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교육법	
	마.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소
	바.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청소년과
3. 학자금지원	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청소년과
	나. 다자녀(셋째아) 가정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여성청소년과
	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라.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원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마. 친환경 학교급식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바.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축산법, 낙농진흥법,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4. 귀농·귀촌인 지원	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농업축산과
	나. 귀농·귀촌인 농업기반시설 지원	-	
	다. 귀농·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	-	
	라. 귀농·귀촌 현장실습(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	농업기술센터
5. 다문화가족 지원	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여성청소년과
	나.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다. 통·번역 서비스 제공		
	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사업명	지원기준	담당부서
6.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7. 전입지원	가. 전입세대 화암관광지 무료 입장카드 배부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민원봉사과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지급		
	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라. 기초건강검진		
	마. 군 장병 등 지원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8. 분야별 총괄 부서	가. 일자리분야		지역경제과
	나. 주거분야		도시건축과
	다. 임신·출산 분야		보건소
	라. 보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마. 교육분야		여성청소년과
	바. 귀농·귀촌 분야		농업축산과
	사. 전입분야		민원봉사과
	아. 사회적 소외계층 분야		주민생활지원과
	자. 성평등 분야		여성청소년과
	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 관련 부서
9. 인구늘리기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별표 2]

세부지원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배부	전입신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입세대 ○ 화암관광지: 관람료 전액 면제 - 1회 유효 / 8인 가족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단 9인 이상 시 인원 확인 후 추가 지급 ○ 회동솔향캠핑장: 사용료 면제 - 1회 유효 / 테크1면에 대한 사용료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이웃사촌상품권	전입신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 50,000원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신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20ℓ/20매 지급 ○ 배부처: 읍·면 	민원봉사과 (읍·면)
기초 건강검진 지원	전입신고 시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입세대 중 20세 이상 전입자 ○ 접수: 보건소 진료실 ○ 내용: 기초건강체크, 혈액 검사, 체지방검사 등 ○ 장소: 보건소·고한사복지소 	보건소 (읍·면)

지원분야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출산일 기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후 계속하여 정선군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전제로 12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월 40만원 지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 월 80만원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정선군에서는 그 이후 1년 동안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지급 ○ 지급처: 지역경제과 ○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역경제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입세대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입세대 ○ 지원: 전입세대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 (5만원 이하 지원) ○ 배부처: 읍·면 	안전건설과 (읍·면)

[별지 서식]

정선군 전입축하선물 관리대장

연번	전입일	전입자 인적사항				신청 분야 (내용)	재고/지급/잔량	결재			지급일	비고
		주 소	성명(서명 또는 인)	생년 월일	연락처			담당자	담당	읍·면·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 정 이 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 최소화와 기존 정착 주민들이 행복하게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시책 마련으로 인구늘리기를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추진사업 및 담당부서 지정(안 제5조, 제6조)
- 지원 및 대상·기준 등(안 제7조)
-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사업의 사후관리 및 기록·관리(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3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제51조 본문 중 “군수” 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 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삭제 2007.12.27.></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제38조제1항제 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p> <p>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p>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다만,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6.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
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
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
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
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
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
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제51조(사용허가) -----
-----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
-. -----
-----.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마련(안 제39조)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 농지를 대부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10,000㎡ 범위)
 -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사유토지와외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생산시설 소유자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1,000㎡ 범위)
 -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 관사 사용의 도덕적 해이 사건 발생에 따른 허가조건 마련(안 제51조)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4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에 둔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영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센터의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5(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의6(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3. 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5. 그 밖에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탁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중인 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p> <p><신 설></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에 둔다.</p> <p>제12조의2(운영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신 설>

제12조의3(위탁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센터의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6(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군수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의무 및 협약조건
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수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취소하기
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탁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개 정 이 유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 위탁시 지원센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건물내에서 업무를 수행 하도록 장소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안과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선읍 봉양7길 16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 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5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1. <u>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제14조(위탁계약) ① (생략)</p> <p>② <u>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u></p>	<p>제14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u></p>

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관한 내용과 보육정책위원회의 해임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유를 개정함(안 제7조)
- 원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6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9명” 을 “1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6항 및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u>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8항 ----- ----- ----- ----- ----- ----- ----- -----.</p>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u>학부모 등 민간인 2명</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u></p>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u>12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u></p> <p>④ <u>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u></p>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
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개 정 이 유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중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일부개정 (법률 제14373호, 2016.12.31.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경비 심의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2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여 교육경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중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일부개정 (법률 제 14373호, 2016.12.31.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안 제1조)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7조)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7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야영데크			노지야영장			비고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수기		성수기 (7~8월)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야영장	20,000	3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텐트 1조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5. 전기사용은 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소형가전만 사용(총 합계 500W 미만) 가능하며,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 정 이 유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시설규모가 비슷한 회동솔향 캠핑장이나, 동강녹색모험의 숲 야영장('17년 운영 예정)에 비하여 시설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료를 상향조정
-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해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을 변경

주 요 내 용

- 야영장 사용료 조정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 변경(안 별표 1)
 - “야영장 사용료 조정”

(단위: 원)

구 분	야영데크			노지야영장			비고
	성수기 (7~8월)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수기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현 행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10,000	텐트1조
개 정	30,000	20,000	30,000	20,000	10,000	20,000	〃
증(△)감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

- 제3호 “비수기 주말·공휴일 적용 요일 변경”

현 행	개 정
3. 비수기 <u>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u>	3. --- <u>평일은 일요일</u> ----- <u>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u> -----.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8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유물 및 수장품”이란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전시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등을 말한다.
 - 가. 전시품 :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물품
 - 나. 유물 :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 다. 수장품 : 구입,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2. “수장고”란 수장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창고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수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정선아리랑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조례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2
2. 아리랑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3. 추억의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제5조(업무 및 시설) ①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리랑 관련 사료·자료와 고고(考古)·미술·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수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향토사의 조사·연구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군민의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기본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 부대시설: 부속설비,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시설
3. 편의시설: 뮤지엄 습, 카페테리아,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시설·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조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을 둘 경우에는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2.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상적 관리 운영 및 운영 발전에 관한 연구·건의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자문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4. 소속 직원 등의 지휘·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박물관에 손해를 끼친 때

4. 민원을 일으킨 때

⑥ 관장 및 직원 등의 복무, 업무분장, 수당·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 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부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그 기부 등 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관람

제9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관람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법령에서 무료 관람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6. 학술조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20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관람객 인솔자
8. 폐광지역(군을 포함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취식 등을 하는 행위
-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장품

제13조(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수장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고 전시 또는 대여해 준 것 외의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5조(대여 및 조건) ① 군수는 수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교육기관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수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수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해당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제17조(허가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1. 아리랑 관련 자료 전시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
-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제18조(허가 및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 및 그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해당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정치·종교·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비·장치 등을 설치 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해야 한다.
 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규정, 관장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제1항제1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대관료 및 반환·면제)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해당 대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 전에 대관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일 등이 생긴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때

③ 군수는 대관자의 대관기간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관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대관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2.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3. 교육목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
4. 군민 20명 이상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장 위탁 운영

제22조(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 및 대관료의 징수를 대행하게 하고 그 징수금액을 수입대체 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경비가 있으면 이를 보조한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목적·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박물관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현장 및 서류를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확인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그 업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두는 정선군 공립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영 제6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관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관장이 주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군수,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건강·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향토박물관운영조례, 정선군 아리랑 박물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향토 박물관 및 해당 박물관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향토박물관	무료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추억의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2]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추억의 박물관	68.80㎡	1일	30,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 제정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선군 향토 박물관 운영조례, 정선군 아리랑 박물관 운영조례는 폐지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박물관의 설립 및 명칭·위치(안 제4조)
- 박물관의 업무 및 시설과 조직 구성(안 제5조, 제6조)
- 관람료 및 관람료의 면제(안 제10조)
- 대관의 허가 대상 및 범위와 대관료(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안 제22조, 제23조)
- 운영 위원회 구성(안 제25조)

제237회 정선군의회(2017. 5.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7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정선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구분 업종	단계 (㎡)	조정 단가 (원)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인상 요금 (원)	인상 금액 (원)	인상 요금 (원)	인상 금액 (원)	인상 요금 (원)	인상 금액 (원)
가정용	1~20	150	180	30	210	60	250	100
	21~40	170	200	30	240	70	290	120
	41 이상	190	220	30	270	80	320	130
일반용	1~50	240	290	50	340	100	410	170
	51~100	260	310	50	370	110	450	190
	101~300	280	330	50	400	120	480	200
	301 이상	310	370	60	440	130	530	220
욕탕1종	1~200	290	350	60	420	130	500	210
	201~300	320	380	60	460	140	550	230
	301~500	350	420	70	500	150	600	250
	501 이상	390	470	80	560	170	670	280
욕탕2종	1~200	430	510	80	610	100	730	120
	201~300	480	570	90	680	110	810	130
	301~500	530	630	100	750	120	900	150
	501 이상	580	690	110	830	140	990	160
산업용	1이상	200	240	40	280	80	340	140

업종구분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용 급수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마을회관, 공중시설(화장실)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일반용 최종요율 적용)
욕탕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비영업풀장
욕탕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 영업용풀장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된 사업장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분뇨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 집 · 운 반 · 처 리	계
2017년도	26원/L	26원/L
2018년도	48원/L	48원/L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1. · 2. (생략)</p> <p>3. <u>군수는 법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u></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별표 7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
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
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공
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
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
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절
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정
선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
고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다.

1.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
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의 산정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의 조사

<삭 제>

개 정 이 유

- 매년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하수 처리원가는 증가되고 있으나, 낮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경영적자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경영적자 해소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하수관거 정비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운영이 곤란한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하며, 별표 7을 삭제 함. (안 제22조)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안 제23조의2)
- 권한의 위임 삭제(안 제28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공공하수도 업종 조정(안 별표 1)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함.

현행단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209원	250원	300원	360원

- 가정용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정선군 현행 상수도 누진체계를 고려하여 3단계로 조정 적용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4단계 누진체계를 적용 함.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함.

현행단가(L)	2017년(L)	2018년(L)	비 고
18원	26원	48원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7-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3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6월 0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정선종합운동장 내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를 통해 야구동호인과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고시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 규 모 : 운동장 A=177,698.4m²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운동장	종합운동장	애산리 476-4일원	178,096	감)397.6	177,698.4	강원도고시 제2008-218호 (’08.8.8)	면적 불일치 정정

■ 운동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운동장	○ 변경 - 면적 : 178,096m ² → 177,698.4m ²	○ 정선군고시 제2011-119호로 기 결정된 운동장 시설의 고시면적과 대장면적이 서로 상이하야 그 오차를 정정함

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78,096.0	감)397.6	177,698.4	100.0	
운 동 시 설	-	66,090.0	증)3,092.0	69,182.0	39.0	
주 경 기 장	1-1	30,570.0	-	30,570.0	17.2	
보조 경기장	1-2	15,590.0	-	15,590.0	8.8	
실내체육관	1-3	5,320.0	-	5,320.0	3.0	
궁도장	1-4	5,990.0	-	5,990.0	3.4	
테니스장	1-5	5,210.0	증)1,907.0	7,117.0	4.0	현황불일치 정정
농구장	1-6	3,410.0	-	3,410.0	1.9	
실내야구연습장	1-7	-	증)1,185.0	1,185.0	0.7	신설
편 의 시 설	-	17,270.0	-	17,270.0	9.7	
주차장①	2-1	9,810.0	-	9,810.0	5.5	
주차장②	2-2	6,940.0	-	6,940.0	3.9	
주차장③	2-3	520.0	-	520.0	0.3	
광장 및 조경시설	-	79,236.0	감)3,489.6	75,746.4	42.6	
광장①	3-1	1,960.0	-	1,960.0	1.1	
광장②	3-2	2,370.0	-	2,370.0	1.3	
광장③	3-3	5,230.0	-	5,230.0	2.9	
녹지 및 기타	3-4	69,676.0	감)3,489.6	66,186.4	37.3	면적불일치 정정 (397.6m ²)
교 통 시 설	-	15,500.0	-	15,500.0	8.7	
도 로	4	15,500.0	-	15,500.0	8.7	

2)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 설 규 모 (m ²)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8,096.0	감)397.6	177,698.4	15,449.59	증)223.82	15,673.41	23,812.77	증)330.34	24,143.11	
운동 시설	소 계		66,090.0	증)3,092.0	69,182.0	15,399.89	증)223.82	15,623.71	23,763.07	증)312.8	24,075.87	
	1-1	주경기장	30,570.0	-	30,570.0	8,810.97	-	8,810.97	13,494.42	-	13,494.42	
	1-2	보조경기장	15,590.0	-	15,590.0	721.82	감)114.32	607.50	721.82	-	721.82	면적불일치 정정
	1-3	실내체육관	5,320.0	-	5,320.0	4,910.26	-	4,910.26	8,003.33	-	8,003.33	
	1-4	공도장	5,990.0	-	5,990.0	380.35	증)22.2	402.55	454.06	증)22.2	476.26	현황불일치 정정
	1-5	테니스장	5,210.0	증)1,907.0	7,117.0	474.43	증)25.34	499.77	987.38	-	987.38	현황불일치 정정
	1-6	농구장	3,410.0	-	3,410.0	102.06	-	102.06	102.06	-	102.06	
	1-7	실내 야구연습 장	-	증)1,185.0	1,185.0	-	증)290.60	290.60	-	증)290.60	290.60	신설
편의 시설	소 계		17,270.0	-	17,270.0	-	-	-	-	-	-	
	2-1	주차장①	9,810.0	-	9,810.0	-	-	-	-	-	-	
	2-2	주차장②	6,940.0	-	6,940.0	-	-	-	-	-	-	
	2-3	주차장③	520.0	-	520.0	-	-	-	-	-	-	
광장 및 조경 시설	소계		79,236.0	감)3,489.6	75,746.4	49.70	-	49.70	49.70	증)17.54	67.24	
	3-1	광장①	1,960.0	-	1,960.0	-	-	-	-	-	-	
	3-2	광장②	2,370.0	-	2,370.0	-	-	-	-	-	-	
	3-3	광장③	5,230.0	-	5,230.0	-	-	-	-	-	-	
	3-4	녹지및기 타	69,676.0	감)3,489.6	66,186.4	49.70	-	49.70	49.70	증)17.54	67.24	면적불일치 정정
교통 시설	소계		15,500.0	-	15,500.0	-	-	-	-	-	-	
	4	도로	15,500.0	-	15,500.0	-	-	-	-	-	-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보조 경기장	○ 변경 - 건축면적 : 721.82㎡ → 607.50㎡	○ 정선군고시 제2011-119호로 기 결정된 보조경기장의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그 오차를 정정함
1-4	공도장	○ 변경 - 건축면적 : 380.35㎡ → 402.55㎡ - 건축연면적 : 454.06㎡ → 476.26㎡	○ 정선군고시 제2011-119호로 기 결정된 공도장의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서로 상이하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오차를 정정함
1-5	테니스장	○ 변경 - 부지면적 : 5,210.0㎡ → 7,117.0㎡ - 건축면적 : 474.43㎡ → 499.77㎡	○ 정선군고시 제2011-119호로 기 결정된 테니스장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서로 상이하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오차를 정정함
1-7	실내 야구 연습장	○ 신설 - 부지면적 : 1,185.0㎡ - 건축면적 : 290.6㎡ - 건축연면적 : 290.6㎡	○ 종합운동장 내 유휴지를 활용한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을 통해 야구동호인의 연습공간 및 군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체육공간 제공
3-4	녹지 및 기타	○ 변경 - 부지면적 : 69,676.0㎡ → 66,186.4㎡ - 건축연면적 : 49.70㎡ → 67.24㎡	○ 종합운동장 내 실내야구연습장 신설 및 테니스장 현황 불일치를 정정하기 위한 부지면적 변경 ○ 정선군고시 제2011-119호로 기 결정된 녹지 및 기타시설의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그 오차를 정정함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7- 535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6. 5.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기 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동읍	면도	가사선	신동 102호	운치리1 132-2	예미리 892-54	8.0 (0.240)	운치리 1046-5	7.5	6.0	도선형변경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안전건설과)

3. 사업시행기간 : 2017. 06. . ~ 2017. 12.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면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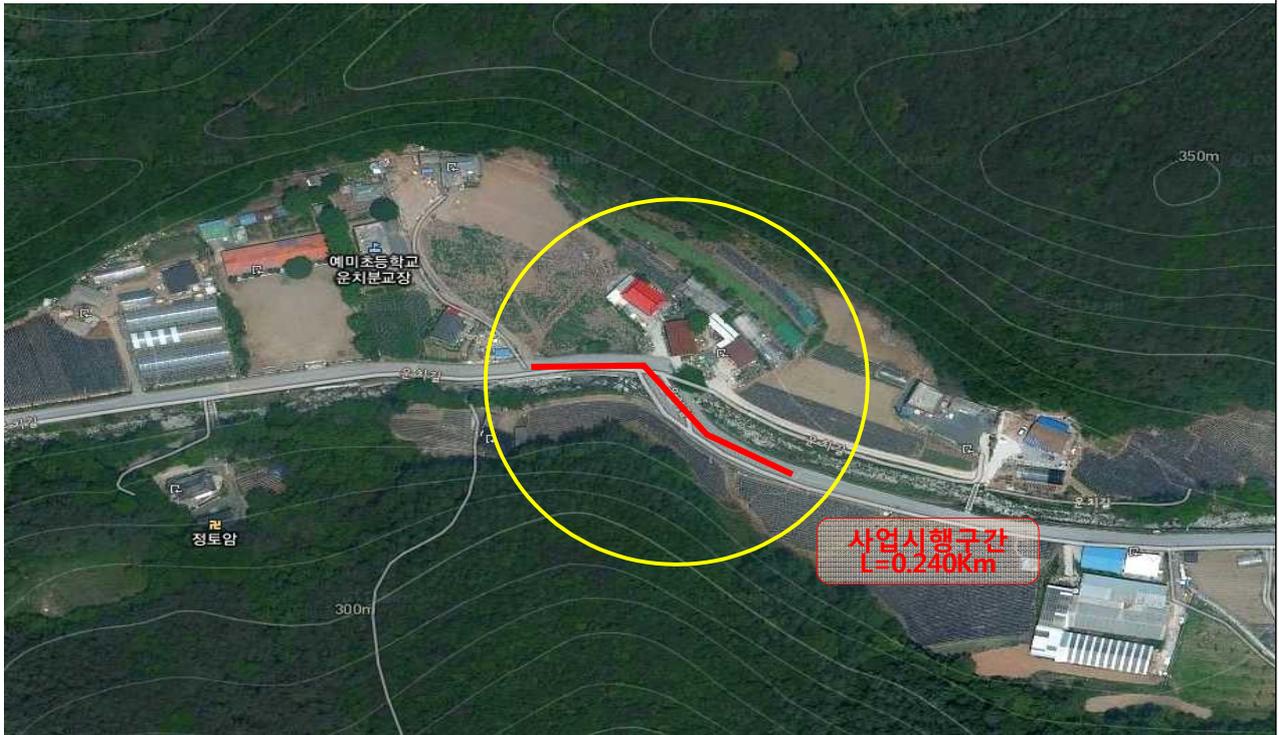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신동읍 면도 102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명	주소	
1	신동읍 운치리	1053-1	도	218	39	정선군			
2	신동읍 운치리	1052-3	도	97	62	정선군			
3	신동읍 운치리	1047-1	도	1,852	60	국토교통부			
4	신동읍 운치리	1047	임	25	25	정덕인	운치리 115		
5	신동읍 운치리	1129-1	구	72,170	158	농식품부			
6	신동읍 운치리	1047-2	임	84	84	정덕인	운치리 115		
7	신동읍 운치리	1046-1	도	545	545	김옥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77-12 삼아 아파트 402		
8	신동읍 운치리	1046-5	도	541	413	정선군			
계				75,532	1,386				

노 선 지 정 도

□ 위성사진



정선군공고 제2017- 587호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정선군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정 선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정선군 하수처리구역 내
2.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2,069,940원/m³
3. 부과대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m³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5. 부과방법 :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제22조에 의거 부과
6. 납부시기 : 시설물(건축물)의 완공전(고지서에 의거 10일전 납부)
7. 적용기간 : 2017년 6월 1일부터